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공고(제2026-36)에 따라 시행한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25.

대 전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천 안 지 청 장

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연번	응시번호	성명	면접시간
인턴 01	고용노동 (천안)	1	AA-2601	권 ○ 성	14:00~
		2	AA-2603	유 ○ 경	
		3	AA-2604	박 ○ 진	
		4	AA-2606	구 ○ 은	
		5	AA-2607	김 ○ 영	
		6	AA-2608	임 ○ 지	
		7	AA-2610	김 ○ 현	14:30~
		8	AA-2612	박 ○ 이	
		9	AA-2613	조 ○ 람	
인턴 02	고용노동 (아산)	1	AB-2601	조 ○ 라	
		2	AB-2602	박 ○ 민	
		3	AB-2605	서 ○ 인	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문자메시지 통보(발신번호: 041-560-2813)

Ⅱ 면접일시 및 장소

□ 면접일시: ’26. 3. 31.(화), 14:00

□ 면접장소

면접장	접수장소	주소
천안고용센터 9층 면접실	천안고용센터 9층 기업설명회장	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 9층

※ 해당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도착 요망

※ 면접 참여 시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고용센터 내 주차공간 협소하여, 면접 응시자 차량 **건물 내 주차 불가**)

III 제출 서류

□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

○ 제출기간 : 2026. 3. 26.(목) 18:00 까지

○ 접수방법 :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 내 '청년인턴 채용' 모집공고(면접)에 제출

□ 제출 서류

①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필수) **[P.4 붙임1 참고]**

② 정책제안서(필수) **[P.5 붙임2 참고]**

③ 우대요건 가점대상자 증빙 1부(해당자)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IV 면접시험 관련 유의사항

○ 면접 참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면접시험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면접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(상기 접수장소)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시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
※ 별도 또는 추가면접은 없음

○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평정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**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**

○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· 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V 최종합격자 발표

□ **'26. 4. 2.(목)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홈페이지,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 및 개별통보 (예정)**

※ 채용예정일: '26. 4. 7.

※ 채용예정 기간: '26. 4. 7. ~ '26. 8. 31.

문의처: 대전지방고용노동천안지청 고용관리과 (☎041-560-2813)

〈붙 임1〉 면접 대상자 필수 제출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귀하

<붙 임2> 면접 대상자 필수 제출

정책제안서

주제	취업지원, 직업상담,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,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또는 정책대안을 아래의 형식으로 제안해 주세요. (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) 참고자료: 우리부 고용정책 관련「2026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」바로가기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
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
※ 주제 및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〈참 고〉 면접장소에서 일괄 작성 예정으로 면접대상자 제출필요 없음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 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**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**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**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**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